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내법제의 세계조화를 위한 약간의 고찰

오 준 근*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내용 분석
- III.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 분석
- IV. GHS와 국내법제의 조화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
- V. 요약 및 결론

I. 문제의 제기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 속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는 매일 석유화학 물질을 연료와 다양한 의류·용기의 재료로 사용한다. 농약과 살충제는 우리 식품 깊숙이 들어와 있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주는 각종 화장품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복합체이다. 화학물질은 이처럼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한편 유익한 물질이지만, 경우에 따라 그 자체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수량 이상이 모이면 강력한 폭발성을 발휘하는 등 매우 위험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세계 각 국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관리목적 등에 상응하게 매우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농림부는 농약관리법을,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관리하며, 그 생산·유통·소비를 규제한다.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적고, 그 유통경로가 간단하다면 위와 같이 다양한 기관이 다양한 법률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이 매우 활발하고, 다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점은 큰 문제로 작용한다. 한 가지 화학물질을 놓고 국가마다, 또한 국가내에서 관할 부처마다 그 분류와 표지를 달리함으로써 인하여 생산·유통 및 소비에 참여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시작하여 각 국가당국이 수시로 제기하여 왔으며 결국 UN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UN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각국에 그 도입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s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GHS)이 그 것이다.¹⁾

UN의 GHS 문서는 국제기구의 구속적 조약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국가·지역·도시·지방 및 기관에 대한 “법률적 권장사항”이다. 이 문서는 세계 각국이 2008년까지 이 문서가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를 세계적으로 “조화”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세계조화를 이룩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안에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서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관 법률을 GHS에 조화

1) 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 국가공식번역본 초안, 2005. 3. 참조.

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이 모든 부서의 통합적 협업이 아니라 개별부서의 개별적인 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 이 점은 우리나라의 부처간의 칸막이 구조에서 나오는 커다란 문제점과 한계를 화학물질의 세계조화라는 세계적인 작업을 놓고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라 지적된다.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를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 경우 특히 그 생산·관리·유통에 참여하는 기업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는 엄청난 영향으로 작용한다. 작업장의 수와 인력의 수, 변경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변경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08년을 1년 밖에는 남겨놓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관계기관은 각자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GHS를 소개하고 그 도입방안을 일반적으로 다룬 논문은 간헐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³⁾ 그러나 GHS를 도입하는 작업이 화학물질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률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그 핵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학계가 이를 주목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을 그다지 발견하기 어렵다.⁴⁾

2) 유엔에서 GHS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1998년부터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2004년 산업자원부 주최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국제표준체계 국내이행관련 회의”가 개최된 이래 GHS 국가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정부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의의 과정은 각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개별적인 작업을 통하여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며, 진정한 의미의 “협동작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3) GHS를 직접 다룬 국내 문헌으로는,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심사단, “UN의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표지체계(GHS) 채택 :GHS 체계 및 핵심내용”, 『화학물질정보』, 제14권 제1호 통권76호 (2004. 1·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04; 김성덕, “최근 화학물질관리 국제동향과 우리의 과제”, 『석유화학』, 통권 제159호 (2005. 10),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2005; 김필제, “GHS출현과 산업계에의 의미”, 『정밀화학』, 통권 제75호 (2004. 11),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2004; 정기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기술표준』, 통권 제43호 (2005. 8),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2005 등 참조.

4) 필자는 소방검정공사가 2006년 소방방재청의 수탁을 받아 행한 연구용역사업 “위험물 분류표지의 국제표준화(GHS) 연구용역”의 공동연구자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과정에서 필자가 직접 집필하였던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추출한 후, 논문의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법학적인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GHS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내의 화학물질 관련법제와 GHS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GHS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함을 그 골격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분석 및 법률비교 방법을 채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의 상이성이 주는 문제점과 GHS의 국내도입에 있어 고려할 사항등에 대한 법학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활발한 연구를 이룩하는 계기가 이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내용 분석

1. GHS의 연혁과 GHS문서의 구성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을 개발하는 작업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작업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안전보건자료의 통일적인 세계 조화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⁵⁾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가 2002년 9월 4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한 행동 계획 22(c)에서 각국이 2008년까지 새로운 GHS의 완전 시행을 목표로, 각국이 가능하면 조기에 새로운 GHS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관련된 국가 및 국제기구가 가까운 미래에 GHS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⁶⁾ 화학물질, 그 유해성, 사람의 보호 방법

여 새로이 작성한 것이다.

5) 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국가공식번역본 초안, 2005, 3쪽 이하에 의하면, GHS는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Agenda 21, 제19장, 제27항이 이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추진력이 되었다.

6) 1992년 작업이 시작된 후로 10년 이상 많은 국가, 국제기관 및 관련 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독성학에서부터 소방 부분까지 광범위한 전문 분야에 걸쳐 이룩한 노력이 집대성된 것이라

에 관한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되면,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것이다. 세계 각 국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의 확대는 화학물질의 이용의 이익을 취하면서 세계 인류와 환경을 보다 안전한 조건으로 이끌 것이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는 국제 교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정보 전달에 관한 각국 요구 조건의 일관성을 한층 증진시켜, 국제 교역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GHS문서는 제1부 도입⁷⁾, 제2부 물리적 위험성⁸⁾, 제3부 건강 및 환경유해성⁹⁾ 등 3개 부와 9건의 부속서¹⁰⁾로 구성되어있다.¹¹⁾

할 수 있다. 작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활동의 중심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위험물운송전문가 소위원회(UNSCETDG)였다.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는 2년 단위로 작업을 실시했으며, UNSCEGHS가 최초로 맡은 과제는 GHS의 세계적인 이용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2003년도에 공식간행된 GHS문서는 이들 소위원회 중의 하나인 IOMC의 원안에서 수정되고 위원회의 최초 회합(2002년 12월 11 - 13일)에서 승인된 것이다.

- 7) 제1부 도입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목적, 범위와 적용, 2. 정의 및 약어, 3. 유해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4. 유해위험성정보전달 : 표지, 5. 유해성 정보 전달 : 안전보건자료 (SDS)
- 8) 제2부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은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화약류, 2. 인화성가스, 3. 인화성액체, 4. 산화성가스, 5. 고압가스, 6. 인화성고체, 7. 인화성고체, 8. 자기반응성 물질, 9. 자연발화성액체, 10. 발화성고체, 11. 자기발열성물질, 12. 물반응성물질, 13. 산화성액체, 14. 산화성고체, 15. 유기과산화물, 16. 급속부식성물질
- 9) 제3부 건강 및 환경유해성은 다음과 같은 1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급성독성, 2. 피부 부식성/자극성, 3. 심한 눈 손상/자극성, 4.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5. 생식세포변이원성, 6. 발암성, 7. 생식독성, 8. 표적장기전신독성 - 1회 노출, 9.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 노출, 10. 수생환경유해성
- 10) 부속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 1 경고표지 구성요소의 적용, 부속서 2 분류 및 경고표지 요약표, 부속서 3 사전주의문구 및 그림문자, 부속서 4 유해 가능성에 기초한 소비자제품 표지, 부속서 5 이해도 시험방법, 부속서 6 GHS 표지 요소의 구성 예제, 부속서 7 GHS 시스템에서의 분류 예제, 부속서 8 수생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지침, 부속서 9 수체에서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변형 및 용해에 대한 지침
- 11) GHS문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a)미국의 작업장, 소비자 및 살충제 시스템의 요건. (b)캐나다의 작업장, 소비자 및 살충제 시스템의 요건.(c)물질 및 제재(preparation)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d)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 권고.

2. GHS의 목적과 그 기초가 된 조화 원칙

GHS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정의 상이성이 주는 불편, 사람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해소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GHS의 목적이자 기대효과로 설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해성 정보 전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된다.

둘째,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인정된 기본체계를 제공한다.

셋째, 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된다.

넷째, 유해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하게 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HS 문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그 근간을 이루는 원칙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들 중 현저한 몇 가지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의 조화가 근로자, 소비자, 일반 시민 및 환경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둘째, 유해성 분류는 원칙적으로 천연, 인공을 불문하고, 화학원소, 화합물 및 혼합물의 고유 성질에서 유래하는 유해성에 대해 실시한다.

셋째, 조화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정보 전달에서 공통적이고 통일된 토대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 운송 수단, 소비자, 근로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한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조화의 대상 범위는 유해성 분류 기준과 유해성 정보 전달 수단(예, 표지 및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등)의 양쪽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세계적으로 조화된 단일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모든 기존 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되는 과정에는 잠정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¹²⁾

3. GHS의 범위와 그 적용

GHS는 (a)물질 및 혼합물을 건강, 환경 및 물리화학적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조화된 판정 기준, 및 (b)표지와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 조화된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 등 두 가지 사항을 그 기본적 요소로 한다.

GHS 문서는 유해위험성의 유형(예, 급성 독성, 인화성)별로 분류 기준 및 유해성 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유해성에 대한 판정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¹²⁾

GHS 문서의 적용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HS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에 적용된다. GHS의 유해성 정보 전달 요소(예, 경고표지, SDS)의 적용 방법은 제품의 구분이나 제품주기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GHS의 표적 대상자에는 소비자, 근로자, 운송 근로자, 긴급 대응자가 포함된다.

둘째, GHS 개발을 위한 위임 사항은 건강 유해 영향을 나타내기 위한 통일된 시험 방법의 확립 또는 추가 시험의 장려를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동물 시험데이터는 유효한 시험관내 시험과 함께, 사람에서의 경험, 역학적 데이터, 및 임상시험도 GHS 적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UN은 각국이 GHS를 도입함에 있어 선택적 도입방법(Building Block Approach)을 채택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선택적 도입방법에 의해, 각 국은 각 시스템의 어

12) 그 밖에 조화의 과정에서 고용주, 근로자 및 소비자 관련 국제기구, 기타 관련 기관의 참가 확보, 유해성 정보의 이해 편의성, 기존 분류와 변경 분류 상호간의 경과조치의 필요성, 기업의 영업비밀보장 등도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13) GHS의 대상 범위는 1992년의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의 의제 21 제19장 프로그램 분야 B의 제26절 및 27절에 기술된 해당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지시 사항에 근거한다. "26.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유해성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은 특히 작업장 또는 가정에서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다. 화학물질의 분류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표지 시스템의 확립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현재 구축중인 조화된 유해성에 관한 분류 및 표지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 "27. SDS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벌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조화되는 유해성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은 가능하다면 2000년까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떠한 부분을 적용시킬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GHS의 일부를 포함하고, 그 시스템으로 GHS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적용 범위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시스템이 화학물질의 발암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화된 분류 체계와 표지 항목을 따라야 한다.¹⁴⁾

GHS문서는 GHS에 대한 설명문서이다. 본 문서는 조화된 분류 기준과 유해성 정보 전달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본 문서에는 GHS 시행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국가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GHS는 자기분류를 허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GHS 시행을 위한 규정은, 당면할 어떠한 요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국가의 국가 정책의 통일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또 GHS는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행정 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행정상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HS 문서는 GHS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지원 도구로서 이용되어 GHS 시행을 지원, 촉진할 것도 기대된다.

III.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 분석

1.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는 매우 다양하다.

14) UN은 “GHS에 대해 조화된 요소군은 규제 접근방법을 정하는 단위벽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정의한다. 누구나 GHS 전체를 이용할 수 있고, 국가나 기관이 어떤 특정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GHS 도입시 전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전체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전체를 채용할 필요는 없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은 작업장이나 운송 부문에서 중요하지만, 소비자는 그 제품의 용도의 형태에 따라서는 물리화학적 위험성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느 부문 또는 시스템이 대상으로 하는 유해성에 대해 GHS의 판정 기준 및 요건과 일치하는 한, 그것은 GHS의 적절한 시행으로 간주될 것이다. UN은 결론적으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GHS 실시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세계적인 GHS 도입으로 완전히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을 보는 관점, 관리목표, 관리분야에 따라 관계부처를 달리하고,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GHS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GHS와 국내법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첫째, 각 법제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방법과 입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수평적 구분이라 함은 각 법률 하나 하나를 나열하고, 이를 GHS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법률과 GHS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입체적 구분이라 함은 목적, 대상물질, 적용대상, 분류체계 등 각각의 논점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모든 법제를 집대성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률 전체와 GHS의 상호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법률 상호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입체적 구분이 보다 논리적 체계에 합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입체적 분석의 방법에 따르고자 한다.

2. 목적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

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등의 제조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GHS는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이 넓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그들의 안전한 사용, 운송, 폐기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계획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으로 조화된 접근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3. 대상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위험물”이다.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위험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물이 되려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일정한 지정수량을 넘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은 위험물에 비하여 그 폭이 매우 넓다.¹⁵⁾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다. 물리적 인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인자를 말하며, 사업주는 안전상 조치의 의무가 있다.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사업주는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⁶⁾

15) 특히 유해성과 위해성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규제의방법도 물질별로 다르다. 유독물과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지정수량과 무관하다. 그 반면에 사고대비물질은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자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고압가스”이다. 이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고압가스는 일정 기준의 압력 및 온도에 대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스를 말한다.

농약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농약”이다.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GHS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화학물질”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 위험성 여부의 판단은 GHS의 한 부분적 요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지정수량은 GHS와 직접 관련이 없다.

4. 분류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등 유별 및 성질을 대분류 방식으로 채택하고, 각각의 유별에 대하여 품명 및 지정수량을 지정하는 분류체계를 채택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분류체계는 유독물, 관찰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¹⁷⁾

16) 특히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과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대상이 된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7) 유독물의 경우는 환경·생태계·인간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그 독성 내지는 위험성을 구분하며, 관찰물질은 유독물로서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장차 유독물로 편입되고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물질을 관찰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고, 사고대비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그 혼합물질 등 사고에 대비한 물질로서 각각 분류 방법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물질을 21개의 품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1번 가연성물질부터 21번 실란(Silane)까지 각각 제조·취급 등 설비에 있어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1. 가연성가스, 2. 독성가스, 3. 액화가스, 4. 압축가스로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1. 가연가스와 2. 독성가스에 대하여는 각각 품명을 열거하고, 가연가스에 대하여는 폭발한계를 독성가스에 대하여는 허용농도를 지정하는 분류체계를 채택한다.¹⁹⁾

농약관리법의 분류체계는 독성 및 잔류성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독성의 정도에 대한 분류는 다시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구분과 어류에 대한 독성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²⁰⁾

GHS는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16개 Class와 하위Category로 구분하고, 건강 및 환경유해성에 따라 10개 Class와 하위 Category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채택한다.

IV. GHS와 국내법제의 조화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

1. 선택적 적용의 필요성

위에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을 보는 관점, 관리

18) 특히 1번 가연성가스와 2번 인화성 물질은 규정수량을 취급수량과 저장수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취급수량으로 5,000(kg), 저장수량으로 200,000(kg)을 규정하고 있다.

19) 3. 액화가스는 액화에틸렌(3.50), 액화에탄(2.80) 등 39개의 품명으로 분류하고 품명별로 1.05를 당해 액화가스의 48℃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정수로 하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20)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급성경구와 급성경피로 나누어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mg/kg 체중)을 I 급(맹독성)부터 II 급(고독성), III 급(보통독성), IV 급(저독성)까지 4단계로 하는 등의 구분방법을 택하고 있다.

목표, 관리분야에 따라 관계부처를 달리하고,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GHS 적용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률과 GHS는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목적, 대상물질, 적용대상 및 분류체계 등에 있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한 각종 국내법이 규정하는 위험물 등 각종 화학물질이 GHS가 규정하는 “화학물질”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의 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서로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²¹⁾

첫째, 국내의 각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GHS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내의 각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GHS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법령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없고, 개정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으며, 개정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도 따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와의 괴리를 자초하는 것이며, 화학물질의 국제적 유통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어서 그 단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GHS를 수정·가감함이 없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적극적 방법이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전면적 조화를 이룩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모든 법제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어서 관할 행정청과 산업계 모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GHS를 선택적·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행정청과 산업계의 충격을 줄여나가는 방법에 해당한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국내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선택적 도입이 필요하다.²²⁾

21) 이 방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소방검정공사, 위험물 분류표지의 국제표준화 연구용역, 2006, 157쪽 이하 참조.

2.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GHS의 선택적·단계적 도입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조화라는 국제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GHS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면서도 국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의 충격을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제도의 총체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영향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규제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와 그 종업원 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관장하는 환경부의 경우 화학물질의 수입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과 인력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의 경우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운반시설과 이들 시설을 운용하는 인력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관장하는 노동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 농약관리법을 관장하는 농림부 등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관련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예컨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등에 관한 규제의 경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제6조)·탱크안전성능검사(제8조)·완공검사(제9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0조 제3항)·제조소등의 폐지신고(제11조)·제조소등 사용정지명령(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취소(제12조)·과징금처분(제13조)·이전명령(제14조)·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무(제15조)·예방규정 제출의무(제17조)·정기점검 및 검사의무(제18조)·탱크시험자 등에 대한 명령(제23조)·안전교육의무(제28조)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22) 선택가능방식은 특정한 요소(block)를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GHS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조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미 조화가 이룩된 사례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중 옥외저장소 관련 제7호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은 GHS에 따라 제정된 국제규칙이다. 따라서 옥외저장소의 경우 GHS에 근거한 국제협약에 따라 인정된 용기는 국내법에 따른 인정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 GHS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규제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체적·계량적으로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그 상대방인 기업의 관계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에서 제시한 관련 작업장의 수와 고용인원의 수와 위험물 분류기준 수정에 따른 체제 정착비용, 위험물 분류기준 수정에 따른 교육과 정보의 유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계량화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²³⁾

넷째, 규제 개선이 가져오는 편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편익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에 물론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무역처리비용 감축에 따른 편익, 위험물에 관한 국내분류체계의 중복모순의 극복에 따른 편익 등은 계량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GHS의 선택적 도입에 따라 장점으로 작용하게 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단계적 도입 국가들과의 연합가능, 개방 압박에 대한 탄력적 대응, 복수분류 문제 해결, 개정에 따른 산업계 손실 최소화, 생산·판매 시장 안정 등의 각종 실익 중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과 정성분석이 가능한 것을 나누어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각 부처별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취합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규제의 개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특정업체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면 또는 특정한 업종의 손실을 최소화함을 고려하여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특정성”은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 사이에서 최대한 회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⁴⁾

여섯째, 규제의 명료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규제의 개선을 이룩하면서 가능한 한 세계조화의 기준 즉 GHS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되,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예외를 채택하는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특히 특정한 블록을 선택하고 예외를 두고자 할 경우 일관성과 원칙이 분명히 국내외적으

23) 2006년 9월 호주정부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매우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Draft Regulation Impact Statement, Sep. 2006 참조.

24) “특정성”의 회피는 WTO협정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는 오준근,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4 참조.

로 천명될 수 있어야 한다.

3. 행정절차의 준수

규제영향분석의 결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준수함이 요구된다.

첫째,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을 관장하는 부서는 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관계부처상호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화하는 긴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 있어 특정 부처의 주도권 장악이 쟁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와 응원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 할 것이다.²⁵⁾

둘째, 입법예고와 규제영향분석서 사전 공표 등에 따라 국민 또는 단체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입법의 골격만을 간단히 제공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아니라 시행령 별표 또는 시행규칙 별표에 자리를 잡고 있다.²⁶⁾ 이들을 개정할 경우 전문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만 비로소 산업계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수렴에 있어 그 방법의 선택에 따라 의견개진의 폭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

25)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와 응원에 관하여는,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145쪽 이하 참조.

26) 예컨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별표1에 위험물의 분류와 지정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표에 규정된 개별적인 분류 방법과 지정수량의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산업계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변경내용을 알 수 없다.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개별적인 사항은 더 나아가 시행규칙에 구체화되어 있다. 예컨대 시행규칙 제3조는 위험물 품명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들에 관한 분류 및 표지가 달라질 경우 이들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령의 개정은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곤란하다. 물론 관계부처와 법제처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는 법정절차이므로 꼭 있어야 한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 협회나 유관 단체에 직접·개별적으로 통지함이 필요하다. 이해관계 있는 기업집단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통로에 법령 개정 사실을 유포시켜야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의 개최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전자공청회와 일반적인 공청회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물론 양자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주도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안에 반영할 경우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²⁷⁾

V. 요약 및 결론

세계 각 국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관리목적 등에 상응하게 매우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농림부는 농약관리법을,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관리하며, 그 생산·유통·소비를 규제한다. 화학물질을 놓고 국가마다, 또 한 국가내에서 관할 부처마다 그 분류와 표지를 달리함으로써 인하여 생산·유통 및 소비에 참여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UN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UN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각국에 그 도입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s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27) 입법예건의 수렴 등에 대하여는, 오준근, 행정입법절차의 운용현황과 그 개선방향,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 김도창박사 8순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5. 6) 306 쪽 이하 참조.

of Chemicals - GHS)이 그 것이다. UN의 GHS 문서는 세계 각국이 2008년 까지 이 문서가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를 세계적으로 “조화”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를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 경우 특히 그 생산·관리·유통에 참여하는 기업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는 엄청난 영향으로 작용한다. 작업장의 수와 인력의 수, 변경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변경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08년을 1년 밖에는 남겨놓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관계기관은 각자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각자의 걸음걸이를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작업은 화학물질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률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그 핵심이 된다. 그러나 법학계가 이를 주목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을 그다지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법학적인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HS) 내용 분석을 하였다. 특히 GHS의 연혁과 GHS문서의 구성, GHS의 목적과 그 기초가 된 조화 원칙, GHS의 범위와 그 적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 분석을 하였다.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을 보는 관점, 관리목표, 관리분야에 따라 관계부처를 달리하고,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GHS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입체적 구분 방식에 따라 이들 법률을 목적, 대상물질, 적용대상, 분류체계 등 각각의 논점을 중심으로 그 상호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GHS와 국내법제의 조화 방안 중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을 가하였다. 먼저 GHS와 국내법제의 조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후, 선택적 적용방식(Building Block Approach)의 타당성을 지적

한 후, 이 방식에 따른 조화를 이룩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세계조화에 관한 법학계의 토론이 활발해지며, 국제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면서도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개선이 이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2.
- 고재선, “국내의 유해 위험물질의 위험기준 비교에 관한 문제점 및 대안”, 『방재연구』 10, 국립방재연구소, 2001.
- 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HS) - 국가공식번역본 초안, 2005.
-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심사단, “화학물질제조등의심사및규제에관한법률 (화심법) :일본 새로운 감시물질제도 도입”, 『화학물질정보』, 제13권 제6호 통권75호 (2003. 11·1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03.
-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심사단, “UN의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표지체계(GHS) 채택 :GHS 체계 및 핵심내용”, 『화학물질정보』, 제14권 제1호 통권76호 (2004. 1·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04.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06.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1993.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6.
- 김성덕, “최근 화학물질관리 국제동향과 우리의 과제”, 『석유화학』, 통권 제159호 (2005. 10),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2005.
- 김종근, “유해물질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화학물질정보』, 제13권 제6호 통권 75호 (2003. 11·1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03.
-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6.
- 김필재, “GHS출현과 산업계에의 의미”, 『정밀화학』, 통권 제75호 (2004. 11),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2004.
- 김효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과 그 의미”, 『석유화학』, 통권 제159호 (2005. 10),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2005.
- 노태홍,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이해2”, 『화학물질정보』 제14권 제1호 통권76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05.

- 노태홍,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이해 I”, 『화학물질정보』 제14권 제6호 통권81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04.
-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 선진화·김정연,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국회보』 통권458호 (2005. 1), 국회사무처, 2004.
- 소방검정공사, 위험물 분류표지의 국제표준화 연구용역, 2006.
- 오준근,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4.
- 오준근, 행정입법절차의 운용현황과 그 개선방향,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 김도창박사 8순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5. 6)
-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1998.
- 이종영, “독일의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제도”, 『중앙법학』 제6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4.
- 이종영, “시설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정기·수시검사제도 :소방법상 위험물시설의 검사제도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 임영욱·양지연·이용진·신동천, “화학물질의 독성에 근거한 분류체계 및 GHS 도입을 위한 대응방안”, 『환경독성학회지』 제21권 제2호 통권 제53호 (2006. 6), 한국환경독성학회, 2006.
- 정기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기술표준』, 통권 제43호 (2005. 8),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2005.
- 정하중, 『행정법각론』, 법문사, 2006.
-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4.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6.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Francois Abram, “유해화학물질 :국제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분류 및 표지 제도”, 『글로벌스탠더드』, 통권175호 (2003. 6)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연구원, 2003.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Draft Regulation Impact Statement, Sep. 2006.

<Abstract>

Legal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Toxic Chemicals and Policy Measures for the Building of Globally Harmonized System Therefor

Oh, Jun Gen

Each country of the world has enacted and implemented very various laws according to the types, the control purposes, etc. of chemicals. In Korea,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has been enacted and put in forc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said Acts are focused on classifying and managing chemicals and regulating their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purposes. Mutually different classifications and labelling of chemicals in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 their agencies have caused corporations and citizens to have a great difficulty in producing, distributing and consuming such chemicals. To solve such problems, the United Nations prepared its own solution, which was called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and then presented it to its members. The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GH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ncourages countries to 'harmonize' their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with those provided in the GHS by 2008.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may have a far-reaching effect on corporations and manpower engaging in producing, managing and distributing such chemicals.

Above all, the adoption of such standards would involve an extensive amendment of chemicals-related laws in Korea. However, this issue still remains to be addressed in academic area of law.

This study is aimed at pointing out the aforesaid problems and solving them in the area of law.

In detail, this paper includes:

First, it contains the analysis of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especially focused on the history, structure, purposes and the principles of harmonization involved, scope, application, etc. of the GHS.

Second, it involves the analysis of various domestic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HS. In Korea, chemicals are being handled by different ministries and agencies, and governed by diversified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tandpoints, purposes, fields, etc. of the control of such chemicals.

Current Acts applicable to the GHS in Korea are the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etc. This study analyzes the mutual relationship of such Acts, centered on their purposes, target substances, classification systems, etc.

Finally, this paper contains the analysis of several important matters necessary to harmonize the GHS with the domestic legal system. With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policy measures for harmonizing the GHS with the domestic legal system, it points 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Building Block Approach, and then conducts the analysis of related regulatory impacts and suggests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be followed in making such Approach.

I hope this study would serve to trigger vigorous legal discussions over the systematization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oxic chemicals and as well to build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legal system therefor, minimizing impacts on the business circles concerned.

주 제 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화학물질분류표지세계조화시스템

Keywords :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